

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09. 3. 3 규칙 제1255호
일부개정 2016. 9. 22 규칙 제1453호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 9. 22>

제2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「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9조에 따른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회의개최 전일까지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9. 22>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6. 9. 22>

③ 학교급식 실태, 지원 신청에 따른 산출 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안양시 및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. <개정 2016. 9. 22>

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⑤ 삭제 <2016. 9. 22>

제3조 삭제 <2016. 9. 22>

제4조(지원 방법) ① 학교급식 식재료비는 지급 신청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.

② 식재료비 지급방법은 「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5조(지원 신청)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학교급식경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서를 사업시행 전년도 7월 31일까지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9. 22>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내역을 사업 시행 전년도 9월

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9. 22>

제6조(지원 계획 통보)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급식지원 계획이 예산으로 확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.

제7조(식재료 공급자의 의무) ①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 농·축·수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9. 22>

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우수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 여부를 지도·감독하고 필요시 관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.

제8조(집행 결과 정산)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정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6. 9. 22>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9. 22 규칙 제1453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의 시행 당시 종전의 「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른 학교급식비지원실행위원회는 폐지하고, 위촉된 위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.

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6. 9. 22>

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서

신청기관	기관명				대표자 성명		
	주소				연락처(FAX)		
급식시설현황	조리실	㎡		종사자	영양(교)사	명, 조리원	명
	배식형태	식당 ㎡ (명),		식당 명, 교실 명			
전년도 급식인원 및 급식비용	급식 이용인원(명)			급식비 내역(천원)			
	총정원	급식인원 (급식학년)	비급식인원	계	식재료비	그 밖의 경비	
사업년도 급식인원 및 급식비용	급식 이용인원(명)			급식비 내역(천원)			
	총정원	급식인원 (급식학년)	비급식인원	계	식재료비	그 밖의 경비	
식재료비 지원신청내역	전년도 식재료비 사용금액(천원)			사업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(천원)			지원 신청 금액 (천원)
	계	우수식재료	일반식재료	계	우수식재료	일반식재료	
	소요사업비 산출 내역						
사업년도 친환경식재료 예정사용비율(%)			사업년도 월평균 급식비(월)				
<p>「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 및 「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 기관 명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표자 (인)</p> <p>안 양 시 장 귀하</p> <p>※ 구비서류: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1부.</p>							

[별지 제2호서식]

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내역

(단위: 천원)

학교명	이용인원 (명)			전 년 도 급식비내역 (일식단가)			전년도 식재료비 총 사용 금액			사업년도 식재료비 사 용 계 획			지원 신청 금액
	계	급식	비급식	계	식품비	기타 경비	계	우 수 식재료	일 반 식재료	계	우 수 식재료	일 반 식재료	
계													

[별지 제3호서식]

학교별 식재료비 지원계획

(단위: 천원)

학 교 별 (시설별)	학생수 또는 이용인원			지원확정 금 액	비 고
	계	급 식	비급식		

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16. 9. 22>

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금액 집행내역 및 정산서

사업추진 결 과	사업대상				사업기간	
	총학생수				급식인원	
자체평가 (당초사업 계획대비 추진결과)						
개선사항 및 향후계획						
지 원 금 집행내역 (원)	예 산 액 (A)	집 행 내 역				집행잔액 (A-B)
		계	지원대상 식재료비(B)	그 밖의 식재료비		
지 원 금 (식재료비 세부내역) (원)	품 목	단 위	수 량	단 가	금 액 합계는 (B)와 동일	비 고
	계					
	※ 기재란 부족 시 본란 별지 작성					
<p>「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8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금액의 집행내역 및 정산서를 제출합 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○○○ 학 교 장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또는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○○○ 대 표 자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시설장)</p> <p>안 양 시 장 귀하</p> <p>※ 구비서류</p> <p>(1) 지출결의서, 세금계산서 등 해당 증명서류 사본 1부.</p> <p>(2) 시 보조금 통장사본 및 계좌해지 증명서 1부.(통장 해지 후 이자 반납)</p>						